

전주지방법원 2015. 6. 9 선고 2015가단931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6. 9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전주시 완산구 C 대 1281.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 부분 150㎡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,나.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608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. 12. 1.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,281.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1,000.8㎡에 관하여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850만 원, 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위 토지를 인도받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.
2.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 부분 150㎡에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하였고,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1, 2, 3, 4,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608㎡을 점유하면서 이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.
3. 이에 원고는 소유권 및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, 위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.

판사 노태선

## 별 지 도 면

전주시 완산구

